

#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

## 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4. 18.

발의자 : 소병훈 · 김정호 · 박정  
윤재갑 · 오영환 · 김병주  
기동민 · 민병덕 · 임종성  
윤준병 · 인재근 · 김승남  
안호영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금융, 물류, 시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법인을 지정·고시하도록 하 고 있으며,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시에 의한 수탁기관의 결정은 해당 지위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책임경영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주요 우정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부의 절차적 통제를 거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우정사업 중 금융, 물류,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).



##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

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금융, 물류,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우정사업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우정사업의 위탁)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 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17조(우정사업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이 경우 금융, 물류,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